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Korean B and C War Criminal Records in Japan

쿠누기 에나(功刀惠那)** · 이영학(Lee, Young-hak)***

1. 머리말
 - 1) 연구 목적
 - 2) 일본의 BC급 전범에 관한 연구 현황 및 연구의 의의
2. 일본의 전범 및 BC급 전범 재판 관련 기록물의 개요
 - 1) 일본의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개요 및 자료군의 구성
 - 2) 전범재판 및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공개 기준의 현황
3.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현황 및 과제
 - 1)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의 개요 및 선행연구
 - 2)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현황
 - 3) 한국인 BC급 전범관련자료 보존의 과제
4. 맺음말

* 본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 관련 자료 현황에 관한 연구」(2017)를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9월 19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18일

〈초록〉

이 논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 군속으로 배속된 한국인이 일본군포로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혐의로 전범이 된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문서관의 자료 현황을 파악하여 한일아가 이브의 가능성을 모색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통해서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수락하였고, 연합군은 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 BC급 전범 재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 재판속에는 일본인 전범만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출신인 한국인·대만인도 다수가 전범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및 배상 문제는 냉전기 동안 한일양국정부에 의해서 방치된 상태였으며, 관련 자료의 공개도 한정되었다.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은 국립공문서관이 각 성에서 이관되어 받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은 주로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의 기록 복사본, 그리고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향후 독립된 이후 일본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종합정리 형태의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전범과 BC급 전범의 일본 국내 이송과 관련된 외교 현황이 주된 내용이고, 한국 및 대만 등의 경우, BC급 전범의 송환을 위한 협상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그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을 보면, 한일간의 식민지관련 공동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식민지관련 아카이브구축에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동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국인 BC급 전범, A급 전범,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sources on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attached as civilians to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Asian Pacific War charged with cruelly treating Allied POWs

in Japanese POW camps, and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joint Korean-Japanese archive of these sources. The Japanese government agreed to the judgement of war crimes by accepting the terms of the Potsdam Declaration, and the Allied troops carried out the judgement of Class B and C war crimes in each region of Asia and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lso known as the Tokyo Trials). However, many non-Japanese such as Koreans and Taiwanese from the Japanese colonies were prosecuted for war crimes. The issues of reparations and restoring their reputations were ignored by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nd public access to their records restricted. Most records on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were transferred from each ministry to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The majority are copies of the judgements of war crimes by the Allied nations or records prepared for the erasure of Japanese war crimes after each department operated independentl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ch records focused mostly on their war crimes and the transfer of B and C war criminals within Japan and the diplomatic situation. In the case of Korea and Taiwan, these records were related to the negotiations on the repatriation of Class B and C war criminals. In addition, the purpose of founding of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and its activities demonstrate its tremendous utility as a facility for building a joint Korea-Japan colonial archive. Thus, the current flaws of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should be improved on in order to build a such a joint archive in the future.

Key Words :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Class A war criminals, National Archives of Japan,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1. 머리말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일본 내 공문서관에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인 BC급 전범’이란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주로 군속으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감시 역할을 하다가,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전쟁범죄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던 한국인들이다. 그들은 전쟁 당시 일본인으로서 아시아 각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식민지 출신인 한국인 및 대만인들은 일본의 패전 후 전쟁재판에서 일본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일본 패전 후, 일본정부에 의해 일본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외국 국적자로서 일본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 및 원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전후(戰後)가 오히려 전쟁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형무소 내에서 복무하거나, 그 후 석방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 그 중에는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존재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인 BC급 전범에 관한 자료가 일본 내 공문서관에 얼마나 있으며, 그 연구현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 글이다.

한국인 청년들이 왜 일본인 전쟁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 많은 연합국의 군인들이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들은 태국 및 미얀마 일대에서 일본군의 보급 물품을 전달하는 시설인 철도건설 현장 등에 강제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매우 심각하였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의 내용 속에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일본군 관리의 책임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겠다”¹⁾라는 규정을 넣었을 정도로 연합군에게 있어서 포로학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동남아시아 일대를 기습 침략한 일본군은 영국 및 호주 등 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포로로 생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들 연합군 포로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였고, 결국 식민지 출신의 많은 한국 및 대만 청년들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합군 포로수용소 관리 인원으로 동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이 동원된 청년들은 일본군 BC급 전범으로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 연합군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당한 피해자 이면서, 일본군과 함께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 전쟁의 이중적 희생자였다(内海愛子·小森陽一·成田龍一 2007, 44-58).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전범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의 특성을 밝히는 일이다. 일본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중국과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장은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일대까지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식민지 출신의 청년들이 함께 동원되었다. 이 전쟁에서 식민지 출신 청년들은 전쟁 현장에서 주로 일본군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일본정부 및 일본인 상관 명령을 따라야 했던 식민지 출신 청년들은 종전 후 연합군 포로학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었다. 연합군 포로학대와 관련된 BC급 전범은 연합군 당사국들이 현지에서 재판을 설치 및 주도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재판 관련 자료는

1)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3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10. 우리는 일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속을 당하거나 하나의 국가로서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포로에게 잔혹 행위를 가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전범자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의 민주적 성향을 되살리고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이중훈 2006, 210-213).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식민지정착을 실시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일대와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에서 재판관을 설치한 연합국 측이 각자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는 정확히 파악하려면 연합국 측의 자료들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둘째, 전후 일본의 독립과정과 전범처리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인식 및 청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립한 일본은 무엇보다도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정부는 연합군에 참여한 각국에 자료수집 의뢰를 하여 전범관련 재판의 복사본 혹은 원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는 이 시기에 수집한 전범관련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후 일본은 후생성 및 법무성을 중심으로 전범관련 독자적인 자료들을 생산해 냈다. 이 자료들에는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대책 문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한 시점에서 한국인 BC급 전범들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기록은 이들 한국인 BC급 전범들의 법적지위와 전후 보상 문제와 관련된 중요자료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자료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일본 전쟁의 특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과 청산문제, 한일 역사인식 시스템의 부재 및 한국인 BC급 전범에 관한 자료 수집 미흡—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관련 일본 내의 역사 아카이브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에 관한 자료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공문서관—국립공문서관, 외교자료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후생성 및 법무성자료실—의 자료보존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BC급 전범에 관한 연구 현황 및 연구의 의의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한 연구는 주로 A급 전범을 재판한 도쿄재판과 BC급 전범을 재판한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A급 전범 연구는 도쿄재판 등 실증적인 재판자료에 의거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여(宇田川幸大 2016, 59~68), BC급 전범 연구는 일본 국외의 재판자료와 전범 본인의 개인적인 회상에 의거해 연구되어 왔기에 대단히 소략하다.

BC급 전범재판의 자료에 의한 연구는 대개 연합국의 보복재판으로서의 성질(田中宏巳 2002), 국제관계사로 본 재판의 모습(永井均 2010), 아시아 각지에서 벌어진 ‘참상’의 실태(林博史 2005), 구식민지 출신 전범에 대한 옹호의 연구(内海愛子 2008)로 이루어졌다. 전쟁의 정책결정에 관여한 A급 재판과는 달리, 중간관리 및 말단관리에 해당하는 BC급 재판을 검토함으로써 전쟁기간, 전후의 일본인이 전쟁과 어떻게 직면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종래의 연구는 일본인 전범재판 중에서 BC급 재판의 특성을 구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국인 BC급 전범에 대한 연구는 우즈미 아이코(内海愛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BC급 전범관련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이다 수수무(飯田進, 1923~2016년)와 우즈미 아이코(内海愛子)를 거론할 수 있다. 이이다 수수무는 주로 일본인 BC급 전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진혼로의 길—BC급 전범이 추궁하는 전쟁(魂鎮への道—BC級戦犯が問いつける戦争, 2009)』에서 일본인 BC급 전범들이 지니고 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영화 “私は貝になりたい(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²⁾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이 연구는 일본인들에게 BC급 전범들의 시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의 책임에 대한 모순 구조를 폭로하였다.

2)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는 육군중사·카토 테즈타로(加藤哲太郎)의 수기 “미치는 전범 사형수(狂える戦犯死刑囚)”의 유언 부분을 바탕으로 하시모토 시노부(橋本忍) 각본으로 제작된 영화다. 스토리는 하시모토 시노부의 창작이며, 가공의 내용이다. 영화는 일본에서 1959년과 2008년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BC급 전범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의 책임 문제를 식민지 지배 구조와 연결시킨 것은 우즈미 아이코의 연구가 처음이었다. 우즈미 아이코(内海愛子)는 1987년 『적도하의 조선인 반란(赤道下の朝鮮人反乱)』³⁾을 출판하여 일본군 내 존재하고 있었던 조선인 군속 및 군인들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후 그는 『조선인 BC급 전범의 기록(朝鮮人BC級戦犯の記録)』(2015)과 『김은 왜 재판을 받았는가(キムはなぜ裁かれたのか)』(2008)를 통해 조선인 BC급 전범의 모집부터 현지의 생활까지 구체적인 실태를 기술하였다. 우즈미는 일본 전쟁범죄의 책임이 식민지 지배를 당한 조선인들에게 부과된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2000년 중반 이후, 우즈미 아이코의 조선인 BC급 전범의 연구 및 기록, BC급 전범의 당사자인 이학래⁴⁾ 씨의 명예회복 활동이 출판과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⁵⁾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도 BC급 전범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관련 자료 미공개 자료와 해외 연합군측 자료 확보의 부족 등 자료의 한계적 측면이 존재하고, 한국의 영웅적 내셔널리즘의 시각 속에서 한국인 BC급 전범 관련 연구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전범재판 관련 자료군과 그 속의 BC급 전범 자료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BC급 전범자료를 대상으로 전후 일본이 전쟁처리 과정 속에서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어떻게 제도적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의 전쟁범죄자 처리 및 관리방

3) 1986년과 2012년에 한국어로 출판되었다(内海愛子·村井吉敬 1986; 2012).

4) 1925년 한국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17살 때 일본군 군속인 포로 감시원의 모 집에 응모하여, 태면철도(泰緬鐵道) 건설 과정에서 연합군 포로의 감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후, 전범으로 문초당하여 호주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일본인'으로서 죄를 얻고, 원호와 보상은 '외국인'으로서 버림받았다. 1955년에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자들과 함께 '동진회(同進會)'를 결성하여, 이후 일관되게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李鶴來 2016).

5) 2015년 8월 15일 KBS 특집 「전쟁과 일본 전범이 된 조선 청년들」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다.

식은 일본의 전후복구 및 역사인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패전 직후 및 독립 직후, 일본인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동원된 한국인 전범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예회복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서,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방치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관련한 공문서 자료에 초점을 두면서 일본정부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왔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본질 및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일본의 전범 및 BC급 전범 재판 관련 기록물의 개요

이 장에서는 일본의 전범관련 기록물의 개요 및 자료군의 구성, 특히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개요 및 자료군의 구성을 살펴 본 후, 공문서관의 전범재판 및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공개기준의 현황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각 성청 및 방문한 공문서관은 직접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서 재구성한 내용이다.

BC급 전쟁범죄인의 재판은 1945년 12월 5일, 미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서 펴낸 ‘전쟁범죄피고인재판규정(戦争犯罪被告人裁判規定)’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전쟁범죄피고인재판규정’에 따르면 군사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평화 위반 죄(Crimes against peace)’이다. 이것은 침략전쟁 등에 대한 계획·수행 행위나 공동모의에의 관여 등 평화를 파괴시킨 침략전쟁의 범죄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당시 수상 등 A급 전범이 이 범죄에 속한다.

둘째는, ‘통례 전쟁범죄(War crimes)’이다,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

약⁶⁾ 및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⁷⁾ 전쟁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 위반은 점령지 내의 일반인민 살해, 학대 혹은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해 이송, 포로, 피억류, 약탈, 도시의 파괴, 군사적 필요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은 황폐화 등을 포함한다.

셋째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이다. 이 규정은 전쟁 전 혹은 전쟁 중에 모든 일반시민에게 가해진 살해, 섬멸, 노예화, 이송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죄목이다. 이것은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 규정으로 정해진 범죄 수행 혹은 이것으로 인해 이루어진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를 바탕으로 한 학대 행위가 포함된다.

‘통례 전쟁범죄’의 이러한 구분은 전쟁범죄를 가능한 한 넓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상에서는 각각 A급, B급, C급으로 전쟁범죄를 구분하였다. 다만 둘째와 셋째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A급 외 모든 전쟁범죄가 ‘BC급 전쟁범죄’로서 취급되었다.

실제로 BC급 전쟁범죄인으로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둘째의 ‘통례의 전쟁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다(大須賀, ウィリアム 1991, 40~41). BC급 재판 피고는 5,702명에 이르렀다.⁸⁾ 이 중에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과 대만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BC급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4,403명)의 7% 정도⁹⁾가 식민지 출신자였던 것이다. 이들은 주로 군속으로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활동하였다(内海愛子 2002, 53-53).

6)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조인된 헤이그조약을 의미한다.

7) 1929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제네바조약, 헤이그조약을 보완한 상세한 조약. 일본은 이 조약을 ‘준용(準用)’하였다. 일본은 헤이그조약과 제네바조약에 서명은 하였지만 포로대우조약에 대해서는 비준하고 있지 않았다(内海愛子, 大沼保明, 田中宏, 加藤陽子 2014, 30).

8) 1999년 8월 법무성은 BC급 전범으로 기소된 5,702명 중, 사형 984명, 유죄 4,404명(기타 314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였다(内海愛子 2002, 53).

9) BC급 전범 중, 유죄를 받은 이의 7.29%는 구 식민지 출신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포로수용소 감시원이었다. 조선인의 경우, 148명 가운데 129명이 감시원이었다. 1명은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이었다. 즉, 조선인 전범 중 130명(78%)이 포로관계였다(内海愛子 2013, 57).

1) 일본의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개요 및 자료군의 구성

이곳에서는 각 성청 및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BC급 전범관련 기록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외무성

일본 외무성이 보유하고 있는 전범관련 기록물을 e-Gov¹⁰⁾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외무성 BC급 전범관련 기록물

문서분류(대)	문서분류(중)	문서분류(소)	행정문서파일명
총무	총무일반	잡건	극동국제군사재판(BC급 전쟁재판 기록의 수집)

※출처: e-Gov에서 전범관련 문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극동국제군사재판(BC급 전쟁재판기록의 수집)’ 기록물은 현재 외무성 대 신관방 총무과 기록서고에 보존되어 있다. 보존기간은 61년으로 정해져 있고 보존기간 만료 시기는 2026년 12월 31일이다. 보존기간 만료되면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국립공문서관

일본의 전범관련 자료는 대부분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9년도에 법무성에서 이관 받은 전쟁재판 관계 자료

10) 전자정부 종합청구(e-Gov)는 총무성 행정관리국이 운영하는 종합적인 행정정보 포털 사이트다. 전자정부 종합청구 (e-Gov)에서는 법령 검색, 행정절차 정보 안내, 퍼블릭 코멘트 정보 안내, 행정문서 파일관리부의 검색, 개인정보 파일부의 검색, 조직·제도의 개요 안내, 정책 제언에 관한 의견 및 요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003권이 보관되어 있다.¹¹⁾ 이 중에 재판기록 등 공판자료를 포함하여 약 3,500권이 2016년 현재 공개되었다(요심사(要審査)공개를 포함한 내용임). 나머지 약 2,500권은 변호인이 수집한 재판 관련 기록 중 미제출된 개인에 관한 사적 메모, 일기, 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자료에 대해서는 종래 비공개로 되어 왔지만 국립공문서관 이용규칙을 바탕으로 ‘공개’ ‘요심사 공개¹²⁾’로 구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에서는 BC급 마닐라재판 기록, 조사표, BC급 사건파일에 포함되는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자료가 검색되었다. 이것은 재판 주최국에 따라 이하의 <표 2>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표 2> 국립공문서관의 재판 주최국별 BC급 전범재판 기록의 현황

재판국	책수
미국 재판 관계	514
영국 재판 관계	269
호주 재판 관계	228
네덜란드 재판 관계	442
필리핀 재판 관계	83
프랑스 재판 관계	40
합계	1,576

※출처 : 국립공문서관 FAQ. [검색일: 2016. 10. 11] <<http://www.archives.go.jp/guide/faq.html>>

이들 BC급 전쟁범죄재판 관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개인, 즉 한국인 또는 일본인의 개인별 재판 기록을 찾을 경우, 그 인물이 어떤 재판에서

-
- 11) 법무성은 1956년 9월 4일, 전쟁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하여 그 중요한 것을 인쇄하여 이것을 후세에 남긴다’는 것을 목적으로 ‘전쟁재판 관계 자료 수집 계획 대강’을 결정하였다. 이 대강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의 일부 및 BC급을 포함한 극동국제 군사재판 관계 자료는 1999~2000년에 법무성으로부터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었다.
 - 12) 요심사 공개란 부책 중 비공개로 해야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람 신청시에 비공개정보의 유무를 확인(심사)하여 열람 제공을 하는 구분을 말한다.

판결되었는지 모를 때는 ‘개견표(概見表, 사건 기소사유 개요·피고성명·판결 내용 등의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그 인물의 판결 번호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 국립공문서관의 BC급 전쟁범죄재판 관계 자료 개견표(概見表)

부책표제
미국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미국 전쟁범죄재판 개견표(초기)
영국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호주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네덜란드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네덜란드 전쟁범죄재판 개견표(초기)
필리핀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필리핀 전쟁범죄재판 개견표(초기)
프랑스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프랑스 전쟁범죄재판 개견표(초기)
중국 전쟁범죄재판 개견표

※출처 : 국립공문서관 FAQ. [검색일: 2016. 10. 11] <<http://www.archives.go.jp/guide/faq.html>>

(3) 외교사료관

전범 및 포로학대 관련자들의 일본국내 이송과 관련국과의 외교협상을 다룬 자료는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의 독립과정에서 한국인 전범들의 처리를 둘러싼 일본 내의 논의가 있었다. 또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시기 한국인 전범들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존재했다. 이 외교자료는 이후 당사자들의 전후보상 문제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외교사료관에서는 167건의 전범 사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으로는 ‘외교기록 공개목록(제1회~제21회)’ 108건, ‘외교기록 공개목록(외무성 이관

파일 건명목록, 2009년~2015년’ 35건,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개시(開示)문서(사본)의 일반이용 목록’ 8건,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외무성 이관파일 건명목록’ 16건 등이다.

‘외교기록 공개목록(제1회~제21회)’ 108건은 제14회에 공개된 외교기록이다. 제14회에 공개된 외교기록은 주요안건과 일반안건으로 나누어 있으며, 전범관련 자료는 일반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안건은 동경재판 외 군사재판 관계 및 문화 교류 일반 등을 포함하는 문화관계로 781건(1,673책)이다.

BC급 전범재판은 요코하마 재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중국, 소련 등 해외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들 BC급 전범들의 형 확정 이후의 이송은 일본과 해당국, 연합국간의 공동협의 하에 진행되었다. 당시 일본당국의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현지 자료의 수집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이후 전범의 명예회복, 야스쿠니합사, 원호금 설정 등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외교사료관에는 <표 4>와 같은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표 4>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개시(開示)문서(사본)의 일반이용 목록

건명	문서명
BC급 전범문제	호주 제1277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방법에 대하여(豪第1277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方について)
	구영 제218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방법에 대하여(欧英第218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方について)
	구영 제76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의뢰에 대하여(欧英第76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依頼について)
	회람번호 구영 제331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回覧番号欧英331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取り寄せについて)
	호주 제1012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豪第1012号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총합 제1064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総合第1064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BC급 전범문제	총합 제1301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総合第1301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총무성 사조 제397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각국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総務省司調397 BC級戦犯裁判記録の関係国からの取り寄せについて)

외교사료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부분 자료는 전범재판 기록을 사본으로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의 일방적인 재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2) 전범재판 및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공개 기준의 현황

일본 공문서관의 전범 및 BC급 전범의 자료군에서 다시 한국인 BC급 전범의 특정인의 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공문서관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공개 공문서 자료는 대부분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요심사’로 구분되고 있다. ‘일부공개’의 경우는 개인정보인 이름을 검은색으로 색칠되어 안 보이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공문서관 및 관련시설의 공문서 공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립공문서관의 공개 기준 및 과제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전범관련 자료는 1999년도에 법무성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전범재판 관계 자료 약 6,000권이 다. 이 중에 재판기록 등 공판자료를 포함하여 약 3,500권은 공개되어 있다(요심사 포함). 남은 약 2,500권에는 변호인이 수집한 재판관련 자료 중에서 미제출한 개인에 관한 사적 메모, 일기, 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 비공개로 해왔다. 하지만 국립공문서관은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의 이용규칙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공개’, ‘요심사 공개’로 구분 변경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첫째, 동경재판번호관계자료(약 1,200권)의 공개현황이다. 이 자료 중 186권은 12월 27일부로 ‘공개’(51권), ‘요심사 공개’(135권)로 구분하여 변경하였다. 남은 자료에 대해서는 2007년 여름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기타 비공개자료(약 1,300권)가 존재한다.

둘째, 국립공문서관의 자료 공개기준에 따라 구분된 ‘요심사 공개’란 책자 중에 비공개로 해야 될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람신청 시 비공개 정보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폴더의 주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정부 각 부처의 전범 및 BC급 관련 자료의 공개 현황

건명	권수	공개상황
극동국제군사재판(A급 판)기록·재판 속기록	약 700권	공개
A급 호주 관계 자료	약 1,200권	비공개
BC급 재판기록, 사건 파일	약 2,000권	요심사 공개
후생성 이관자료(복원연호 관계 등)	약 500권	공개 100권, 요심사 100권, 비공개 300권
사법법제조사부연구·조사자료 등	약 1,600권	공개 400권, 요심사 200권, 비공개 1000권
합계	약 6,000권	

※출처 : 국립공문서관, 2006. 전쟁재판관련자료 공개에 대해서. [검색일: 2017. 9. 9]
<<http://www.archives.go.jp/news/pdf/061226.pdf>>.

이 중에서 한국인 BC급 전범 기록물 공개상황은 거의 ‘일부공개’ 및 ‘비공개’, ‘요심사’에 해당된다. ‘일부공개’된 자료는 개인정보인 이름이 검은색으로 대부분 지워져 있다.

(2) 외교사료관의 공개 기준 및 과제

외교사료관에서 ‘BC급 전범 기록물 중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개시 문서(사본)의 일반이용 목록’의 BC급 전범 자료를 필자가 직접 청구하여 확인하였다. 그 자료는 <표 6>과 같다.

〈표 6〉 외교사료관의 BC급 자료 중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개시문서(사본)의 일반이용 목록

건명	문서명	공개상황
BC급 전범문제	호주 제1277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방법에 대하여(豪第1277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方について)	공개
	구영 제218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방법에 대하여(欧英第218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方について)	공개
	구영 제76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입수 의뢰에 대하여(欧英第76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の入手依頼について)	공개
	회람번호 구영 제331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回覧番号欧英331号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しの取り寄せについて)	일부공개
	호주 제1012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豪第1012号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공개
	총합 제1064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総合第1064号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공개
	총합 제1301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수집에 관한 건(総合第1301号BC級戦犯裁判記録の収集に関する件)	공개
	총무성 사조 제397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각국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総務省司調397 BC級戦犯裁判記録の関係国からの取り寄せについて)	일부공개

※출처 :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인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 개시문서(사본)의 일반 이용 목록에서 필자 작성.

직접 자료청구를 한 ‘회람번호 구영 제331호, 호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BC급 전쟁재판 기록 사본을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回覧番号欧英331オーストラリア政府保管にかかるBC級戦争裁判記録写しの取り寄せについて)는 ‘BC급 재판기록 입수 희망 일람표(BC級裁判記録入手希望一覧表)’에서는 항소사실의 개요, 피고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또한, ‘총무성 사조 제397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각국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総務省司調397 BC級戦犯裁判記録の関係国からの取り寄せについて)’의 ‘BC급 재판기록입수희망 일람표(BC級裁判記録入手希望一覧表)’에서도 위와 같이 항소사실의 개요, 피고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BC급 재판 관계 자료 입수희망 사건표’에서는 당시 소속, 사건 개요,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구한 자료 중인 ‘총무성 사조 제397호, BC급 전범재판 기록 각국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総務省司調397 BC級戦犯裁判記録の関係国からの取り寄せについて)’는 ‘Last of Cases of Class B and C War Criminals On Which Materials are Des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마지막의 BC급 전범 사실 재판자료의 일본 정부를 위한 공개)’ 부분에서 Organization to which the accused belonged(피고인이 소속된 조직), Summary of the Case(재판에 대한 요약), Defendant(피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BC급 전범의 재판자료 등에 대한 명부확보는 하고 있으나 이것을 개인에게 공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범 자료의 경우, 피의사실(被疑事実)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자료공개에 제한을 두는 이유이다.

(3)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공개 기준 및 과제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국립공문서관 및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

연구소 전사연구센터가 보관하는 아시아역사자료 중에서 이들 소장기관에서 전자화가 진행된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는 건 단위의 공개가 아니라 부책(簿冊) 단위로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 단위 별로 모두 공개된 부책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즉 부책 단위 하에 일부공개 혹은 비공개, 요심사 등 하나라도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BC급 전범관련 자료는 현재 취급된 내용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으로 향후에도 일반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¹³⁾

이러한 특성은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은 대부분 국립공문서관이 각 성에서 이관되어 받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의 기록 복사본, 그리고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향후 독립된 이후 일본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종합정리 형태의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전범과 BC급 전범의 일본 국내이송과 관련된 외교현황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한국 및 대만 등의 경우, BC급 전범의 송환을 위한 협상의 자료들이 외교사료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공문서관법의 공개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공개된 자료 중 일부만을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인 BC급 전범관련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시설로 보인다. 대신 향후 한일식민지 관련 아카이브구축에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공동 활용의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13) 2016년 10월 31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연구원 오오노 타이간(大野太幹) 씨, 사쿠마 타케시(佐久間健) 씨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현황 및 과제

1)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의 개요 및 선행연구

(1)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의 개요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동경재판과 BC급 재판의 판결을 수락하여 ‘일본국민’인 전범의 형 집행을 인수하였다.¹⁴⁾ 하지만 형 집행을 인수한 전범 중에는 식민지 출신 중 일본군으로 복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인·대만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정부는 주권이 회복되자, 일본군 출신의 전범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조약이 발효한 이틀 후인 4월 30일 일본정부는 종전 직후 연합군에 의해 정지되어 있던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을 개정 및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공무상의 부상 혹은 질병 또는 사망에 의해서, ‘국가배상의 정신에 바탕하여’ 군인·군속이었던 자 또는 그 유족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었다. 제정된 것은 동년 4월 30일이지만 법률은 동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단, 이 법률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적용되

14)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11. Japan accepts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of other Allied War Crimes Courts both within and outside Japan, and will carry out the sentences imposed thereby upon Japanese nationals imprisoned in Japan. The power to grant clemency, to reduce sentences and to parole with respect to such prisoners may not be exercised except on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r Governments which imposed the sentence in each instance,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Japan. In the case of persons sentenced by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uch power may not be exercised except on the decision of a majority of the Governments represented on the Tribunal,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Japan. [검색일: 2017. 9. 9] <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B-S38-P2-795_1.pdf>

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즉, 4월 1일로 소급하여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한국인과 대만인은 아직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法務府 民事局長 通達)¹⁵⁾의 형태로, 구식민지 출신자, 즉 조선인, 대만인들이 일본국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날이라고 하고 있다. 즉, 이 원호법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나 대만인도 원호법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호적법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하였다.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식민지 출신자들에는 ‘내지(内地)’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외지(外地), 즉 조선이나 대만의 호적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¹⁶⁾ 즉, 이 원호법 적용에서 호적법을 추가로 적용한 것은 일본인이 아닌 제3국의 식민지 출신의 대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간접적인 강제동원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속으로서 포로관리를 맡게 된 이들 조선 청년들이 악화된 전쟁 상황에서 연합군 포로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열악한 보급 속에서 연일 지속되는 강제노동의 동원을 위하여 다수의 연합군 포로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이들 조선 및 대만 청년들이 전후 연합군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되었으며,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호적법 적용은 이들 조선 청년들이 일본의 전범으로 유

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한국인·대만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여 모두 일본국적을 상실하는 등, 구식민지 출신자의 일본국적 상실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견해를 통지한 통달이다.

16) 식민지 통치 하에서 일본인은 ‘내지호적(内地戶籍)’ 조선인은 ‘조선호적(朝鮮戶籍)’으로 나누어 있으며, 양자나 혼인 등의 신분행위 이외에는 호적의 이동은 못 하였다. 1923년 7월 12일 시행한 ‘조선호적령’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조선호적을 편성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시에 조선호적에 있는 자를 조선국가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일본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원호법에서 국적이 아니라 호적을 가져온 것으로 내지호적에 없는 조선인·대만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었다(內海愛子 2002).

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본정부의 배상이나 보상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2)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를 둘러싼 한일정부간의 움직임

① 일본정부의 무대응

일본정부는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을까? 공문서 기록에 의하면, 1965년 한일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BC급 전범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2005년에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기록물(한국측 의사록)을 살펴보면, 1952년 2월 4일 제29회 예비회담 때, '(3) 한국 전범자 문제'로서 "한국 측에서 현재 스가모(巢鴨)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전범자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방침이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반응으로 '그것은 별개 문제니까 별도로 논의하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다'(아리미쓰 2013, 91 재인용)란 기록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일본정부가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위의 문서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립이 되는 시점이다. 일본의 독립회복과 함께 일본에 거주 중인 제3국인들, 즉 한국과 대만인들의 일본국적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인 BC급 전범들의 법적지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이들의 법적지위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지만, 일본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 전범문제에 대한 추가 대응이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한국전쟁 이후 재일동포들을 친북주의자로 인식하면서 반일 반공정책의 연장선에서 대일정책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이승만 정권에 게 일본의 전범으로 사형당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인수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1952년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인 전범들을 석방함과 동시에 1952년 한국인 BC급 전범들에 대해서 일본 내 가석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에서 모집되어 동남아시아의 전선으로 파견된 이후, 전범이 되어 일본의 수가모 형무소로 이송된 이들에게 일본은 매우 낮은 생활환경이었다. 연고자도 없이 가석방된 한국인 BC급 전범 중에서 자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생활보호를 요구하며 가석방을 거부하기도 하였다(内海愛子 2015, 309).

이후 이학래 씨를 비롯한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1955년에 ‘동진회(同進會,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를 결성하여 당시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에 생활보호와 전후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李鶴來 2016, 235).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후 일본의 모든 수상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죄 및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7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이학래 2013, 45).

일본정부는 의원입법으로 1987년 대만주민 전몰자 유족 등에게 조위금(1인당 200만엔)과 2000년 평화조약국적이탈자전몰자 등 조위금(1인당 260만엔, 중병자 400만엔) 및 2010년 시베리아 억류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급부(1인당 25만엔~150만엔)을 각각 지급해 왔다. 특히 포로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정부는 구 연합국 포로와 그 가족을 일본에 초대해 대접하며, 그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는 2016년 말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토론되어 의원입법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는 않다.

② 한국정부의 소극적 대응

그렇다면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

까? 첫째, 한일국교정상회담 시기의 대응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자 1966년 5월 20일 이학래 씨를 비롯한 동진회는 한국정부에 해외 공민으로서 문제해결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에 대해 외무부 장관은 “귀하가 탄원한 ‘동진회 회원의 일본정부에 의한 전후보상의 진전을 요구하는 요청’에 대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일본정부에 요청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했음을 알립니다”(아리미쓰 2013, 92 재인용)고 답변하였다(1966년 10월 20일자, 대한민국정부 외무부 유럽 아시아 북 722 18933). 그러나 구체적 대응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과거청산 정책’의 연장선 속에서도이다. 한국에서 국회입법을 통하여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6, 6).

이 시기 이학래 씨와 동진회는 2005년 4월 27일 한국인 BC급 전범문제 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1942년 6월경 일본 포로감시원으로 3,000여 명이 강제 징용되어 부산 노구치(野口)부대에 입대 후 25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남방 각지 포로수용소에 배속되었다. 이후 일본군 패전까지 포로감시 업무에 종사하고 패전 직후 책임을 전가당하여 연합군 재판을 통해 BC급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일본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차별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살아야만 했던 사실들에 대한 진상조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6, 146)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이학래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던 것이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정 이후인 2005년 11월 18일부터 24일에 걸쳐 관련

자 면담과 자료 수집을 위한 일본 도쿄 출장을 진행했다. 출장 중 조사팀은 이학래 씨를 비롯한 동진회 회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일본 국립공문서관, 구 스가모(巢鴨)형무소 터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 자료로는 『포로취급의 기록(俘虜取扱の記録)』, 『전쟁재판참고자료 포로관계 제1권(포로에 관한 제접규등)(戦争裁判参考資料 俘虜關係 その一(俘虜に關する諸法規等))』, 『포로수용소전개요도(俘虜收容所展開要圖)』 등이 있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6, 146).

그 결과 2006년 4월 19일자 동진회의 탄원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전범자는 일본의 전쟁 수행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범이 되는 행위를 하고 처벌되었으므로, 이 피해에 대하여는 국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견지로부터 귀하를 포함하여 일본에 잔류하고, 체류 중인 우리나라의 전범피해자에 대하여 [그 보상 사유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입장입니다.”(2006년 4월 19일 민원 회신/동북아시아 1과)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有光健 2013, 105).

이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2006년 5월 26일자로 한국정부 ‘국무총리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학래 회장 등 동진회 회원들의 피해를 강제동원 피해로 인정했음을 통지하여,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조선인 BC급 전범으로 낙인찍힌 이들에게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이들은 전후 6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대일협력자’, ‘친일파’란 오명을 씻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사망자나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학래 2013, 44-45).

당시 한국정부는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설립하여 위로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두 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로 통합하여 2015년 말까지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위로금의 지원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였다.¹⁷⁾

2010년 12월 23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선의 청년들을 전장에 몰아서 법정에 서게 하면서도, 전후 조선인 청년에게 지원을 거부해 온 일본정부를 비판하며,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아리미쓰 2013, 91-92)고 하는 성명서가 포함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9년 민주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학래 씨를 비롯한 한국인 BC급 전범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일본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기관이 책임 있는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의 조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정부의 압력에도 일본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이학래 씨를 비롯한 동진회는 마지막 방식으로 2014년 10월, 한국 헌법재판소에 이 한국인/조선인 BC급 전범문제를 제소하였다. 역설적이지만, 일본정부의 해결을 방치해온 한국정부의 부작위를 규명하기 위한 헌법제소였다. 1952년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외교적 해결을 해 오지 않은 것은 중대한 부작위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학래 씨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까지 해 준 조국을 고소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저해 왔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실망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간절함이 한국의 헌법제소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内海愛子 2015, 335).

17) 이 위원회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2008년부터 시작된 위로금 지원 등의 활동을 2015년 12월 31일로 모두 종료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보존 하고자 하였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6, 6-7).

2)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현황

이 절에서는 일본의 공문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자료는 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1장의 선행연구에서 거론한 다나카 히로미의 BC급 전범 관계 자료집은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목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나카 히로미도 BC급 전범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BC급 전범관련자료집』(1~6권)을 발간하였다(田中宏巳 2011a; 2011b; 2012a; 2012b; 2012c; 2012d). 다나카는 이러한 재판자료 및, 일본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바탕으로 BC급 전범재판의 성격, BC급 전범들의 형무소의 생활, 일본정부와 연합군의 교환, 조선인 및 대만인을 포함한 BC급 전범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는 전범 재판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자료를 소각함으로써 오히려 증거 부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밝혔다.

(1) 일본국립공문서관의 보존 현황

국립공문서관의 전범관련 공문서와 BC급 관련 목록은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다.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은 <표 7>과 같다.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는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표 7>의 리스트를 청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부분공개는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사된 기록물로서 열람이 가능하나,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공개된 기록물은 원본으로 공개하고 있다. 원본은 당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갱지이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이 기록물은 연필로 기재하지 않고 인쇄되었기 때문에 글자도 비교적 선명하며,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다.

자료청구의 경우, 한국인 BC급 문헌군이나 타이틀로 부여된 것은 없다.

기본적으로 수형자 명부는 공개되고 있고, 각자의 이름은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으나, 출신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다. 호적상의 출신지를 통해서 해당 수형자가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다.

〈표 7〉 국립공문서관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

부책명	건명	작성부국	공개상황
한국대만출신전쟁재판수형자명부·1955년 12월 1일 현재(韓國台湾出身戰爭裁判受刑者名簿 昭和30年12月1日現在)	한국대만출신전쟁재판수형자명부(韓國台湾出身戰爭裁判受刑者名簿)	후생성 인양원호국(厚生省引揚援護局)	부분공개
최고재1952년(마) 제79호 재판기록사(인신보호법을 의한 석방청구사건)·한국출신전범자동진회(最高裁判所27年(マ)第79号裁判記録写(人身保護法による釈放請求事件) 韓国出身戦犯者同進會)	재판기록 인신보호법을 의한 석방청구사건(裁判記録人身保護法による釈放請求事件)	동진회 편찬(韓国出身戦犯者同進會編纂)	공개
수형자세화회·신법인관계·1955년 9월 기(受刑者世話會 新法人關係 昭和30年9月起)	수형자세화회·신법인관계·1955년 9월 기(受刑者世話會 新法人關係 昭和30年9月起)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 조사국(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부분공개
전국여성·BC급 전범에 대해서(수가모위원회)(全国女性の皆様BC級戦犯について(巢鴨委員会))	BC급 전범에 대해서 1952년 9월 수가모위원회(BC級戦犯について昭和27年9月巢鴨委員会)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 조사국(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부분공개
전범관계자 가나다리명부(1)(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1))	전범관계자 이roh명부 이의부~수의 부(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イの部~スの部)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 조사국(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부분공개
전범관계자 가나다리명부(2)(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2))	전범관계자 이roh명부 이의부~수의 부(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イの部~スの部)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 조사국(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부분공개
전범관계자 가나다리명부(3)(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3))	전범관계자 이roh명부 이의부~수의 부(戦犯関係者いろは名簿イの部~スの部)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 조사국(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부분공개

※출처 : 국립공문서관.

〈표 8〉은 현재 신청중이고, 한 건이 심사중이다. 국립공문서관 측의 연락에 의하면, 보존 상태가 안 좋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대로 심사요청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표 8〉 국립공문서관의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

부책명	건명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4)·1956년 2월 1일 조제(本籍別戰爭裁判受刑者名簿(4)·昭和31年2月1日調製)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카가와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토쿠시마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에히메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코치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후쿠오카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사가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나가사키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오이타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쿠마모토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미야지키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카고시마현)
	본적별 전쟁재판 수형자 명부(오키나와현)

※출처 : 국립공문서관.

국립공문서관의 전체 자료 중에서 한국인(조선인) BC급 관련 모든 문헌의 정확한 수량과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 분야의 자료군의 생산 장소가 후생성과 법무성, 방위성인 것은 사실이나 전범과 일본인 BC급 관련 문서군 속에서 한국인 BC급 관련 문헌들만 별도로 특정화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분야만을 특별히 신청하는 방식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외교사료관의 경우, 제2장 제2절 (2)에서 언급한 대로 'BC급 전범 문제'는 전자문서이며, 인명을 검은색으로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BC급 전범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제2장 제2절 (3)에서 언급한 대로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개인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의해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물의 보존 여부는 알 수 없었다.

(2) 민간 공개 자료군의 현황

일본 내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문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자료군은 BC급 전범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다나카 히로미의 자료목록 속에 일부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나카 히로미의 BC급 전범관련 자료집의 한국인 BC급 자료의 목록은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조선인·대만인 등 전범 관계 자료(田中宏巳 2012, 595-601)

원자료	내용
본방 전쟁범죄인 관계 집권 제4권(本邦戦争犯罪人関係雑件第4巻)	예전에 일본군에 종군하여 여전히 외지에 있는 조선인에 관한 문제(嘗て日本軍に従軍し依然外地に在る朝鮮人に関する問題)
강화조약 발표 후에 있어서 본방인전범취급 관계집권 스가모형무소기출소자 및 재소자 월보고 영연방제국의 부 영국 제1권(講和条約発効後における本邦人戦犯取扱関係雑件 巢鴨刑務所仮出所者並びに財所有者月別報告 英連邦諸国の部 英国 第1巻)	조선인 대만인 재소자조(朝鮮台湾人在所者調)

<표 10> 조선인·대만인 등 석방 관계 자료

원자료	내용
본방전쟁범죄인관계집권 제3권(本邦戦争犯罪人関係雑件 第3巻)	스가모(巢鴨)출소 한국인 취급에 관한 함의 사항(巢鴨出所韓国人取扱に関する申合せ事項)
본방전쟁범죄인관계집권 제4권(本邦戦争犯罪人関係雑件 第4巻)	외지에서 일본에 인양해온 피일본인 및 외지에서 환송된 전쟁범죄인이며, 내지에서 석방된 비일본인의 취급요령(外地より日本に引き揚げてくる非日本人及び外地より送還せられた戦争犯罪人であって、内地において釈放せられた非日本人の取扱要領)

강화조약발표 후에 있어 본방인전범취급관계잡건 각국의 태도 및 조치관계 영연방제국의 부 영국 제1권(講和條約発効後における本邦人戦犯取扱関係雑件各国の態度並びに措置関係 英連邦諸国の部 英国の部)	조선인, 대만인전범 석방의 건(朝鮮人、台湾人戦犯釈放の件) 조선인 전쟁범죄자 석방 관고 이유 추가에 관한 결정서(朝鮮人戦争犯罪者赦免勧告理由追加に関する決定書)
강화조약발표 후에 있어 본방인전범취급관계잡건 사면관고관계 영국의 부(講和條約発効後における本邦人戦犯取扱関係雑件赦免勧告関係 イギリスの部)	사면관고에 관한 결정서(赦免勧告に関する決定書) 사면관고에 관한 결정송부(赦免の勧告に関する決定送付)
강화조약발표 후에 있어 본방인전범취급관계잡건 각국의 태도 및 조치관계 호주 제2권(講和條約発効後における本邦人戦犯取扱関係雑件各国の態度並びに措置関係オーストラリア 第2巻)	전범관계 외무성, 법무성, 인양원호청 연락회의(戦犯関係外務省、法務省、引揚援護庁連絡会議)

위 목록에 의하면 외무성이 한국인 BC급 자료를 작성하였고, 그 목적은 전범석방에 해당한다. 이후 이 자료는 전범 석방에 대한 일본 외무성과 재판국가의 석방에 관한 협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서 목록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자료군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등 파악하기 어렵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목록들이 현재 국립공문서관의 자료보존 체계와 일치하고 있지 않아 한국인 BC급 자료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3) 한국인 BC급 전범관련자료 보존의 과제

(1) 일본의 공문서관의 과제

이 절에서는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의 보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파악한 것처럼 한국인 BC급 전범의 전체적인 자료군만 특정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의 전범재판 자료와 BC급 전범재판 자료군의 상호 비교 속에서 한국인 BC급 전범의 개별적 기록들을 추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보공개법 5조에 의해 개인을 특정하여 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료청구하면서 기록물을 일일이 확인해 보면, 검은색으로 지우고 있는 이유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많았다. 그것은 정보공개법 5조에 의한 비공개 부분을 조치한다는 것보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비공개 부분이나 인명을 한 명 한 명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당부분을 검은색으로 지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¹⁸⁾

전범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립공문서관 측에서 부분공개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제청구를 요청하면 더 많이 공개가 가능하다. 실제로 해제청구 절차에 관한 안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공개 대상의 일반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국립공문서관측의 인력부족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제도적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문서 공개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외교사료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할 때, 방문 목적으로 연구주제에 대해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접수대 담당자가 해당 기록물의 목록이나 외교사료관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외교사료관의 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 사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개인의 기록에는 검은색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유족이나 당사자라 하더라도 완전 공개된 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에,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시아 관련 자료의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만을 특정화해서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18) 2016년 10월 31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연구원 오오노 타이간(大野太幹) 씨, 사쿠마 타케시(佐久間健) 씨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공문서관의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 확보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공유 및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디지털 자료의 공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 제안은 한일간의 식민지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 전후보상 당사자 및 시민단체 보존 자료의 과제

일본의 공문서관을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즈미 아이코, 다나카 히로미 등 민간 학자들이 발굴한 자료는 한국인 BC급 전범 당사자들의 전후보상 운동에 힘을 주는 소중한 기록물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BC급 전범 당사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동진회 회원들의 기억과 개별 기록물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 당사자들도 재판받을 때, 재판 당시의 기억이 애매한 상태 속에서 이학래¹⁹⁾ 씨는 호주의 재판기록을 확보하여 전후보상 재판에 대응하여야 하였다.

한국인 BC급 전범의 경우, 당시 재판 속에서 일본어로 진술하였고 이를 영어로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실질적인 진술서의 내용이나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통역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들의 재판기록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술과 재판기록의 진술서의 내용의 상호 비교를 통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즈미 아이코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인 청년들은 연합군 포로를 관리하는 군속으로 동남아시아 현지로 보내어졌다. 이들 중에는 이상문²⁰⁾ 씨처럼

19) 이학래 씨는 태면철도(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역 415km 철도)의 150km지점 건설현장인 헌톡에서 포로감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패전후 포로를 태면철도 건설에 동원하였다는 죄목으로 '통례의 전쟁범죄'로 전쟁재판에 기소되었다.

20) 이상문 씨는 1944년 12월 29일 밤에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자와도 산 속에서 한국인군속 10명이 비밀리로 모여 발족시킨 항일비밀결사, 고려독립청년당을

고려독립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일본군대 내에서 항일운동을 조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양철성 씨처럼 종전 이후 현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다 전사한 이들도 있다. 게다가 같은 공간 속에서 이학래 씨처럼 행정병으로 발탁되어 포로들의 강제노동 계획서를 매일 작성했던 업무로 인하여 전범으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들의 선택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공문서관의 자료들은 이러한 현지의 사회구조적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할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및 당사자들의 기억의 자료를 함께 보존할 필요성도 있다.

(3) 한국 측의 자료 현황 및 과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이학래 씨와 동진회는 2005년 4월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 18일부터 일본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6년 5월 26일자로 한국정부는 이학래 회장 등 동진회 회원들의 피해를 강제동원 피해로 인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측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들은 한국인 BC급 자료군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호주, 네덜란드 등 연합국이 실시한 재판 및 그 외 준비 자료들을 확보하여 자료군

조직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한 후한국정부로부터 고려독립청년당의 활동이 독립운동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한국정부는 이상문 씨의 공훈을 인정하고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國家報勳處 2012, 377-378).

으로 확보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당사자가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측 위원회의 구체적인 자료 확보 현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후속 연구 속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한국 측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 일본 측 자료청구와 추가공개의 영역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측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 논문은 일본 내 한국인 BC급 전범자료 현황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역사문제가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것은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공동의 공문서 네트워크가 부재하며, 특히 일본 내의 식민지시대 관련 아카이브즈의 네트워크가 부재한 측면이 원인 중 하나이다.

일본에 식민지 관련 아카이브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본의 대표적 공문서관인 1) 국립공문서관, 2) 외교사료관, 3)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기관들의 제도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전후보상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것과 관련한 공문서 자료들은 일본의 패전과 포츠담선언에서 합의된 전범재판(도쿄재판), 그리고 연합군이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실시한 BC급 전범재판의 기록물들을 파악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일본의 전범 및 BC급 전범관련 공문서의 보존 현황 및 관리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의 전범관련 자료는 1999년도에 법무성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전범재판관계 자료 약 6,000권이다. 이 중에 재판기록 등 공판자료를 포함하여 약 3,500권은 공개되어 있다(요심사 포함). 남은 약 2,500권 속에는 변호인이 수집한 재판 관련 자료 중에서 미제출한 개인에 관한 사적 메모, 일기, 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 비공개로 해 왔다.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대부분의 기록은 각 성(省)에서 국립공문서관에 이관한 기록물 안에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의 기록 복사본, 그리고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향후 독립된 이후 일본인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종합정리 형태의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전범과 BC급 전범의 일본 국내이송과 관련된 외교 현황이 주된 내용이고, 한국 및 대만 등의 경우, BC급 전범의 송환을 위한 협상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개인의 명예 및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은 건 단위의 공개가 아니라 부책(簿冊) 단위로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 단위별로 모두 공개된 부책을 공개하고 있다. 즉 부책 단위 하에 일부공개 혹은 비공개, 요심사 등 공개가 아닌 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 BC급 전범관련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그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보면, 한일간의 식민지 관련 공동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식민지 관련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공동 활용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관련한 정보공개와 한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4 장에서는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의 소재와 관련 공문서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동경재판과 BC

급 재판의 판결을 수락하여 ‘일본국민’인 전범의 형 집행을 인수하였다(제 11조). 하지만, 형 집행을 인수한 전범 중에는 식민지 출신 중 일본군으로 복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인·대만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전후보상 및 배상 문제는 냉전기 동안 한일양국 정부에 의해서 방치된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도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5월 한국정부는 이학래 회장 등 동진회 회원들의 피해를 강제동원 피해로 인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공문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역사 자료를 생성하는 일뿐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일본인 전범 및 BC급 전범의 공문서 자료군 속에서 한국인 BC급 전범의 전체적인 자료군만을 특정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전범재판 자료와 BC급 전범재판 자료군의 상호비교 속에서 한국인 BC급 전범의 개별적 기록들을 하나하나 추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제2장 제3절 (2)에서 언급한 대로 정보공개법 5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특정을 목적으로 한 이용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범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립공문서관측에서 부분공개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제청구를 요청하면 더 많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부분공개 대상의 일반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국립공문서관측의 만성적 인력부족이나 명예훼손 등의 제도적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문서 공개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교사료관 및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시아 관련 자료의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만을 특정화해서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특히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일본과 아시아 근린제국 등과의 역사에 관해서 국가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국민일반 및 관계국의 국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함께 이들 각 국가의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다. 다만 입법이 아니라 각의결정을 바탕으로 설치된 조직이라서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충분한 운영 및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공문서관의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 확보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디지털 자료의 공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는 것이 한일간의 식민지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 BC급 전범 자료의 현황을 논하였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의 전체 자료 중에서 한국인(조선인) BC급 관련 전체 문헌의 양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 분야의 자료군의 생산 장소가 후생성과 법무성, 방위성인 것은 사실이나, 전범과 일본인 BC급 관련 문서군 속에서 한국인 BC급 관련 문헌들만이 특정화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야만을 신청하는 방식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온 각 분야의 자료와 현재 공문서관의 전범과 BC급 관련 자료군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본연구의 주제인 일본 내의 식민지 관련 공문서관의 자료 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 관련 자료들의 보존 현황과 관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한계 속에서 그 설치 목적과 역할에 기반하여 한일양국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센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 이루지 못한 미흡한 과제들은 향후 장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第20券 2011年度褒賞者』, 201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6. 6. 『위원 회활동결과보고서』.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동진회, 동진회, 동진회를응원하는모임. 2013.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 아리미쓰, 켄. 2013. 한국인 BC급전범의피해보상을촉구하는입법운동.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동진회, 동진회,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 이종훈. 2006.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서울: 서해문집.
- 이학래. 2013. 특별발언파란만장한인생, 우리가걸어온길.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동진회, 동진회,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 内海愛子, 村井吉敬 지음. 1986. 『赤道下에서 韓國人の 抗日闘争』. 서울: 大旺社.
-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東京: 山川出版社.
- 内海愛子. 2008. 『キムはなぜ裁かれたのか』 東京: 朝日新聞出版.
- 内海愛子. 2013. 기조발제: 김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식민지시대·전쟁재판·전후보상을 생각한다.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동진회, 동진회,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 内海愛子. 2015. 『朝鮮人BC級戦犯の記録』. 東京: 岩波書店.
- 内海愛子, 大沼保明, 田中宏, 加藤陽子. 2014. 『戦後責任—アジアのまなざしに於えて』. 東京: 岩波書店.
- 内海愛子, 小森陽一, 成田龍一. 2007. 東京裁判が作った戦後日本. 『現代思想』, 35(10), 44-70.
- 内海愛子, 村井吉敬. 2012. 『적도에 묻히다: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서울: 역사비평사.

- 大須賀, ウィリアム, 1991. 『ある日系二世が見たBC級戦犯の裁判』. 東京: 草思社.
- 李鶴來, 2016. 『韓国人元BC級戦犯の訴え一何のために 誰のために』. 梨の木舎.
- 林博史, 2005. 『BC級戦犯裁判』. 東京: 岩波書店.
- 永井均, 2010. 『フィリピンと対日戦犯裁判』. 東京: 岩波書店.
- 宇田川幸大, 2016. 戦犯裁判研究所現在. 『歴史評論』, 799, 59-68.
- 有光健, 2013. 韓国人BC級戦犯の被害補償を促す立法運動.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동진회, 동진회,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 田中宏巳, 2002. 『BC級戦犯』. 東京: 筑摩書房.
- 田中宏巳, 2011a.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1巻戦争裁判と諸対策並びに海外における戦犯受刑者の引揚げ』. 東京: 緑蔭書房.
- 田中宏巳, 2011b.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2巻陸軍関係戦犯者名簿』. 東京: 緑蔭書房.
- 田中宏巳, 2012a.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3巻 BC級戦犯裁判・釈放関係資料』. 東京: 緑蔭書房.
- 田中宏巳, 2012b.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4巻 BC級戦犯裁判・釈放関係』. 東京: 緑蔭書房.
- 田中宏巳, 2012c.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5巻 BC級戦犯裁判・釈放関係』. 東京: 緑蔭書房.
- 田中宏巳, 2012d. 『BC級戦犯関連資料集第6巻 BC級戦犯裁判・釈放関係』. 東京: 緑蔭書房.

〈참고 사이트〉

일본 국립공문서관. 〈<http://www.archives.go.jp>〉